

#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치물 이동명령(원상복구)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

시흥시 배곧신도시 청사4(소방파출소)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적치물 자진이동(원상복구) 명령을 통보하고자 하나, 무단점유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8일

시흥시장



1. 공고제목 :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치물 이동명령(원상복구)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내용 : 무단점유 적치물 자진이동(원상복구) 명령
3. 법적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, 행정대집행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
4. 처분원인 :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치물 자진이동 계고
5. 처분대상

소재지	무단점유 내용			비고
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
배곧신도시 청사4(소방파출소)	미상	미 상	물탱크	

6. 공고기간 : 2019. 10.18. ~ 11.1.(14일간)
7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8. 공고사항
  - 가.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19.11.1일까지 자진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자진이동(원상복구)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.
  - 나. 행정대집행 시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에게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  - 다.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- 라. 문의처 : 시흥시 스마트시티사업단 담당자 양은지(031-310-6968)

제2019- 11 호

## 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본 토지(배곧신도시 청사4(소방파출소))는 시흥시 소유로, 공공시설용지입니다. 무단경작 행위에 대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19년 11월 1일 까지 반드시 이동조치 및 원상복구**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(비용납부명령서) 및 제6조(비용징수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이의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 스마트시티사업단 담당자(양은지 031-310-696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배곧 청사4(소방파출소)용지	물탱크	1식	이동 및 폐기처분

2019년 10월 18일

### 시 흥 시 장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